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의 관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 관련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사문화 방지 및 감면 조례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5. 12.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